

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가점 부여 유의사항

□ 가산점 부여

근거	▪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 시험의 가점 등)
가점 비율	▪ 만점의 5% 또는 만점의 10%
가점 부여 기준	▪ 모든 시험(필기, 면접, 실시 전형) ※ 주의 사항: 필기 또는 면접 전형이 2개 이상의 시험으로 이루어 질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 부여

□ 가산점 상한제

근거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 시험의 가점 등)제3항 - 국가보훈처 「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41조의3(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)
상한제	-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까지 가점 부여 ※ 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

-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 : 3명 → 필기시험 가점 합격(예정)인원 : 없음 ※ 최종 선발예정인원 : 1명					결정 방법
응시자	원점수 (1)	가점 (2)	합계 (1+2)	순위	
A	99	0	99	2	1)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3명이므로 합격선은 가점을 합산하지 않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3위인 사람의 점수인 98점임 2)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A~C이며, 필기시험 가점 합격자는 없음 3) 필기시험 합격자 A~C의 순위는 가점을 합산한 합계점수로 결정함 ※ 최종 선발예정인원 1명이므로 최종 가점합격자는 없음
B	98	5	103	1	
C	98	0	98	3	
D	97	0	97	4	
E	96	0	96	5	
F	95	0	95	6	
G	94	0	94	7	
H	93	0	93	8	
I	92	0	92	9	
J	89	0	89	10	

- ②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, 보훈보상자법 제35조 제3항, 5·18유공자법 제22조 제3항,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(이하 '가점합격자'라 한다)에서 제외한다.

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 : 10명 → 필기시험 가점 합격(예정)인원 : 3명 ※ 최종 선발예정인원 : 5명					결정 방법
응시자	원점수 (1)	가점 (2)	합계 (1+2)	순위	
A	90	10	100	1	1)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10명이므로 합격선은 가점을 합산한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10위인 사람의 점수인 89점임 2) 취업지원대상자인 A, D, G, I의 원점수와 합격선 점수 89점을 비교 - A는 원점수로도 합격이 가능 (90 > 89) 하므로 자기특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사람에 해당되어 <u>가점합격자에 포함되지 않음</u> 3)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A~J이며, 필기시험 가점 합격자는 D, G, I 임 ※ 최종 선발예정인원 5명이므로 최종 가점합격자는 1명
B	99	0	99	2	
C	98	0	98	3	
D	87	10	97	4	
E	96	0	96	5	
F	95	0	95	6	
G	84	10	94	7	
H	93	0	93	8	
I	87	5	92	9	
J	89	0	89	10	
K	83	5	88	11	
L	82	5	87	12	
M	81	0	81	13	